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95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을 명문화 하며,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등록신청 관련 첨부서류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상표법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조문을 마련하고, 산업재산권 설정의 등록방법 중 우선권 주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33, Fax: (042)472-3467

이메일: 20060090@korea.kr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제4조제2항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제5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 ①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
-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상고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상고

제13조제8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2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 ⑧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⑫ 영 제2조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한다.

① 영 제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제27조제2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제28조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 실용신안등록번호



-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 마.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항수
- 사. 분류기호 및 고안의 명칭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 바. 디자인의 수
  - 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제29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연월일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파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차.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등록공고의 연월일

제30조제2항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조제3항

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제31조제2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파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카.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파. 등록공고의 연월일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溯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

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 1. 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가.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 나.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제48조제2항제1호 및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

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제4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같은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및 제7항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 등 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  
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등록사항 란 중 “출원 연월일”란에 “(국내 서면제출일)”을 병기하고 “유별”을 “분류기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은 국제디자인등록원부(별지 제7호 서식)를 신설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사항 란 중 “출원 연월일, 년 월 일, 출원 번호,” “원출원일자, 년 월 일, 원출원번호,” “공고 연월일, 년 월 일,” “등록결정(심결)연월일, 년 월 일, 등록의 구분”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등록사항 란 중 “「상표법」 제6조제2항”을 “「상표법」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등록공고일 연월일”을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기재요령 1. 【신청인】 란 가., 나.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1. 【신청인】 란 나.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기재요령 3. 【등록권리자】 란 가., 다., 4. 【등록의무자】 란 다., 라.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하고, 3. 【등록권리자】 란 다., 4. 【등록의무자】 란 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라.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14. 【첨부서류】 란 가. (4)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를 “제34조제1항제3호 ”로 하며, 9. 【등록원인】 란에 “정당권리자로의 이전”을 추가하고 나머지 후단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정당권리자로의 이전”은 특허법 제99조의2제1항(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를 포함)에 따른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기재요령 2. 【등록권리자】란 가., 다., 3. 【등록의무자】란 가., 다.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2. 【등록권리자】란 다., 3. 【등록의무자】란 다. 중 “한정재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기재요령 3. 【등록권리자】란 가., 다., 라., 4. 【등록의무자】란 가., 라., 10. 【채무자의 표시】란 나., 다.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3. 【등록권리자】란 라., 4. 【등록의무자】란 라. 중 “한정재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기재요령 2. 【등록권리자】란 가., 다., 3. 【등록의무자】란 나., 라.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2. 【등록권리자】란 가., 3. 【등록의무자】란 나.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2. 【등록권리자】란 다., 3. 【등록의무자】란 라. 중 “한정재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다.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하고, 1. 【등록권리자】란 다. 중 “한정재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기재요령 2. 【등록권리자】란 가., 다., 3. 【등록의무자】란 가., 다.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2. 【등록권리자】란 다., 3. 【등록의무자】란 다.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기재요령 2. 【등록권리자】란 가., 나., 다.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하고, 2. 【등록권리자】란 다., 3. 【대위신청인】란 중“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2. 【등록권리자】란 다.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기재요령 2. 【등록권리자】란 가., 다., 3. 【등록의무자】란 가., 다., 11. 【질권설정의 내용】란, 12. 【신탁사항】란 (1), (2), (3).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2. 【등록권리자】란 다., 3. 【등록의무자】란 다.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나., 라., 마., 11. 작성시유의 사항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1. 【등록권리자】란 마.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하며, 7. 【등록료】란 가. 【분할납부 여부】란 에서 「상표법」 “제34조”를 “제72조”로 하고 10. 【첨부서류】란 다. 서류의 원용 (1) 에 있는 「상표법」 “제5조”를 “제4조”로 하

며, 「상표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을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2) 에 있는 “(「상표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를 “(「상표법」 “「상표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다., 라.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1. 【제출인】란 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1. 【제출인】란 다.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3. 【등록보정 대상】란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보정할 사항이 동일한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보정 대상】란을 다음 예와 같이 반복하여 적습니다.

단, 감면 및 면제대상자의 증명서류, 위임장 보정에 한함

[예]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 2-1-02-1234567-12

【등록보정대상서류명】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등록보정 대상】**

**【발송번호(접수번호)】** 2-1-02-1234678-34

**【등록보정대상서류명】** 설정특허·등록료납부서

별지 제25호서식 납부서 란 중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을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으로 하고, 기재요령 2. **【등록권리자】** 란 나., 라., 3. **【납부자】** 란 가. 다.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며, 2. **【등록권리자】** 란 라., 3. **【납부자】** 란 다.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하고, 6. **【납부대상의 표시】** 란의 마. (2) **【납부회차】** 란 중 「상표법」 “제34조”를 “제72조”로 하며, 기재요령 2. **【등록권리자】** 란 가.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의 회복신청을 하면서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의 회복신청을 하면서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로 하고, 10. **【회복신청】** 란의 표시 가. “특허발명(등록고안, 실시중인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신청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를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로 하고 13. **【첨부서류】** 란 가. 예문 중 “2. 특허발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배달증명서 1통 ”을 삭제 하고, 라.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의 증명서류 제출 중 “(2) 실시 중인 특허발명(등록고

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를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기재요령 2. 【신청인】란 가., 다., 8. 작성시 유의 사항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2. 【신청인】란 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2. 【신청인】란 다.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나., 2. 【등록의무자】란 가., 다.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1. 【등록권리자】란 가., 2. 【등록권리자】란 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1. 【등록권리자】란 나., 2. 【등록의무자】란 다.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나.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1. 【제출인】란 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1. 【제출인】란 나.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나., 2. 【등록의무자】란 가., 나. 중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하고, 1. 【등록권리자】란 나., 2. 【등록의무자】란 나.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으로 하며, 2. 【등록의무자】란 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4조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4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리고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원부의 서식)</p> <p>①~② (생략)</p> <p>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 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 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p> <p>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86조의31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p> <p>⑤ 「상표법」 제86조의31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p>	<p>제2조(등록원부의 서식)</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디자인 등록원부(「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 서식, 디자인신탁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p> <p>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p> <p>⑤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p>

<신설>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① ② (생략)

1. (생략)

2. 「특허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

3.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① (생략)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

⑥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①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심판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

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

<신설>

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① 제2조제6항에 따른 국제등록 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디자인권의 표시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심판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

③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의 등록사항란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제14조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기록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② (생략)

1. (생략)

2. 「상표법」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4.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5.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상고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② (생략)

1. (생략)

2. 「상표법」 제71조제1항, 제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9조,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상고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①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

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5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

4.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5. 「상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상고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①~⑦ (생략)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⑨~⑪ (생략)

⑫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

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121조에 따른 심판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상고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등록이 완료되거나 신청이 반려된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서류반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서류반환 요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⑨~⑪ (현행과 같음)

⑫ 영 제2조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인 등록명의인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법인 명칭

인 표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신설>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등 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② 영 제15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생략)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략)

나.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  
번호

다.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  
일

라.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마.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  
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번호란: 실용신안

당한다)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  
-----  
-----.

1. (현행과 같음)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현행과 같음)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  
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  
번호

마.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  
일

바. 특허청구범위의 항수(項數)

사.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  
법) -----  
-----  
-----  
-----.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 실용

번호

2. (생략)

가. 실용신안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다. 실용신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라. 실용신안청구범위의 항수

마.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생략)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디자인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국제등록 및 국제공개의 연월일, 디자인의 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

신안등록번호

2. (현행과 같음)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항수

사. 분류기호 및 고안의 명칭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디자인등록번호란: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국제디자인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번호 및 분류번호

<신설>

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  
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  
의 연월일

바. 디자인의 수

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  
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  
류번호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디자  
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디자인등록  
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국제등록  
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의 연월일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  
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  
번호

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생략)

1. 2. (생략)

가.~자. (생략)

차.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대하여 상표권  
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파. <신설>

② 「상표법」 제86조의41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  
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  
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  
항 외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  
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마. 디자인등록결정 또는 심결  
의 연월일

바. 디자인권 설정등록 연월일

3. 디자인권자란 중 등록사항  
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가.~자. (현행과 같음)

차.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대하여 상표권  
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파. 등록공고의 연월일

② 「상표법」 제20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  
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  
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  
항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  
에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  
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86  
조의14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  
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  
제등록번호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  
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  
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  
정(「상표법」 제86조의6제1항  
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  
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  
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  
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  
정등록의 방법) (현행과 같음)

1. (생략)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차. (생략)

록하여야 한다.

1.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  
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180  
조제3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  
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  
록번호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  
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상표  
법」 제180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  
다)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  
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  
정(「상표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  
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  
정등록의 방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가.~차. (현행과 같음)

카. 「상표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  
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파. <신설>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  
록방법)

① 「상표법」 제86조의17제1항  
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  
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  
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  
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  
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  
야 한다.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  
등록의 방법)

① 「상표법」 제54조제1항 및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표권  
(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  
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  
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

카. 「상표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표시(같은  
조 같은 항에 해당하여 상표권  
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파. 등록공고의 연월일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  
록방법)

① 「상표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출원일이 소급(遡及)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  
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  
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  
등록의 방법)

① 「상표법」 제93조제1항 및 제  
94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  
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  
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  
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

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  
할이전등록방법)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표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그 지  
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표  
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  
다.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 ① (생략)  
1.~5.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제103조제1  
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실시합  
에 따른 등록 및 그 등록의 말  
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  
다.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 ①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권  
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  
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

여야 한다.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  
할이전등록방법)

-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상  
표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 ①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취소신  
청에 대한 확정결정, 디자인일부  
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확정  
결정, 심판에 대한 확정심결, 재  
심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한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1.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① (생략)

1.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120조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특허법」 제178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심판은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하고,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

1. 취소신청, 이의신청, 심판, 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 확정결정, 확정심결, 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② (생략)

1.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같은 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같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② (현행과 같음)

1.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

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  
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  
원부의 권리란의 등록사항란에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연월일 및 취  
지와 청구인 또는 소 제기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상표권의 예고등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법」 제71조제1항, 제  
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 제  
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및 제7  
5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확정심  
결,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  
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상표법」 제86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  
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또는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  
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  
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가.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나. 취소신청·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214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확  
정심결, 같은 법 제157조제1항  
에 따른 재심(거절결정 불복심  
판에 대한 재심은 제외한다)에  
대한 확정심결 또는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및 제7항에 따

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1조(준용)

- ① 「특허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 취소등록 및 특허권 취소신청의 예고등록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②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 취소등록 및 실용신안권 취소신청의 예고등록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에 따라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디자인권 취소등록 및 디자인권 취소신청의 예고등록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른 소에 대한 확정판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록하고,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상표에 관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 조약 규칙」 또는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부합하는 신청서식 및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